

「사업장 사고위험 정보 등 빅데이터 구축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빅데이터 구축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채용구분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

□ 채용인원 : 3,000명

○ 모집단위(일선기관)별 채용인원

기관명	채용인원	기관명	채용인원
서울권역	335	대구권역	344
서울광역본부	164	대구광역본부	102
강원지역본부	29	경북지역본부	61
서울북부지사	119	대구서부지사	132
강원동부지사	23	경북동부지사	49
부산권역	551	인천권역	1,210
부산광역본부	189	인천광역본부	181
울산지역본부	96	경기지역본부	292
경남지역본부	149	경기북부지사	233
경남동부지사	117	경기중부지사	146
광주권역	246	경기서부지사	241
광주광역본부	85	경기동부지사	117
전북지역본부	40	대전세종권역	314
전남지역본부	27	대전세종광역본부	85
제주지역본부	19	충북지역본부	108
전북서부지사	44	충남지역본부	121
전남동부지사	31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덧붙임1】**
- 만 18세 이상이면서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주 5일(전일제, 9시~18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아래 항목 중 가장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 유형에 따라 서류 및 면접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적용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
 - ※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초과 불가(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해 본인이 사전에 확인
- 장애인 : 서류 및 면접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적용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취득자 : 자격수준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1, 3, 5% 가점 부여

자격수준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가점비율	1%	3%	5%

- 적용대상 : 아래 표의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20개)만 적용

1)가스기술사 2)기계안전기술사 3)산업위생관리기술사 4)소방기술사 5)인간공학기술사
 6)전기안전기술사 7)화공안전기술사 8)가스기사 9)산업안전기사 10)산업위생관리기사
 11)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12)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13)인간공학기사 14)가스산업기사
 15)산업 안전 산업기사 16)산업위생 관리산업기사 17)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18)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19)화재 감식평가기사 20)화재 감식평가산업기사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종목(건설 제외)

3. 근무조건 및 수행업무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 8. 31.(월) ~ 12. 15.(화)
- 근무유형 :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공단 27개 일선기관별 소재 지역 또는 관할구역(사업수행지역) 내
 - ※ 공단 일선기관별 소재지역 및 관할구역(사업수행지역)은 [\[덧붙임2\]](#) 참조
- 보수수준 : 약 1,992천원/月(시급 8,590원), 출장비 별도
 - ※ 무급휴무일(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세전 급여로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포함

□ 수행업무

- (사고위험정보 조사) 전국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중심으로 사고위험정보(위험도, 노후도 등) 방문 실태조사 및 조사 내용 전산시스템 입력, 사업장 민원 및 질의 대응, 내부 조사원 문의에 대한 대응,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관리 및 복무업무 지원
- (안전보건자료 디지털化) 재해조사의견서, 교육 콘텐츠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디지털화(중요 인자별, 활용 목적별로 분류)
- 자세한 내용은 직무설명서[\[별첨\]](#) 참조

4. 채용전형별 일정 및 방법

※ 채용전형별 일정은 업무사정 및 대외환경(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1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 8. 4.(화) 10:00 ~ 8. 10.(월) 18:00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접수방법 : 안전보건공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접수

☞ 원서접수 유의사항

- 해당 채용분야 직무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조건 충족 및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예: 전직 직장명, 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력,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기재사항(예: 정보 누락, 허위 또는 불성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 후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하오니 기재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토 후 최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공고 기간내 모집단위(일선기관)를 달리하여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온라인 접수 외 **우편 및 방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본인 확인, 채용조건, 우대사항, 원서접수서류 기재사항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당일 면접시작 전까지 별도로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2 서류전형

- 심사일정 : '20. 8. 12.(수) ~ 8. 14.(금)
- 심사내용 : 지원동기, 직무관련 지식·경험 등
- 심사방법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합격안내 : '20. 8. 18.(화)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

3 면접전형

- 심사일정 및 장소 : '20. 8. 20(목) ~ 8. 25(화), 공단 27개 일선기관 소재지역내(추후공지)
- 심사내용 : 직무관련 지식·경험(직무역량평가), 인성 및 태도(가치적합성평가)
- 심사방법 : 증빙서류 제출·확인 후 면접심사
- 합격안내 : '20. 8. 27.(목)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

제출대상	제출 증빙서류 목록
응시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발급 확인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원본(제시용) 및 사본(제출용) 1부.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원본 1부. <'20. 8. 10. 이후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20. 8. 10. 이후 발급>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원본 1부. (현장 작성 및 제출) ○ 타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참여 해당여부 확인서 원본 1부. (현장 작성 및 제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장애인증명서(지자체 발급) 원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원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전형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면접심사 전까지 현장에서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명시한 증빙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채용조건, 우대사항, 원서접수서류 기재사항 등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 확인 결과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채용절차 참여 제한 및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발표

- 발표일자 및 방법 : '20. 8. 27.(목)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
 - ※ 일정은 업무사정 및 대외환경(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내용 : 최종(예비) 합격 여부

5 임용

○ 임용일자 : '20. 8. 31.(월) 예정

○ 임용서류

제출대상	임용서류 목록
합격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원본 1부.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원본 1부. * (현장 작성 및 제출)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2매. ○ 병적증명서(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보충역)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2부.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 신원진술서(사진 포함) 원본 2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 서약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 보안서약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 근로계약서 원본 2부.(현장 작성 및 제출, 1부는 본인 보관) ○ 최종합격자 확인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 타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참여 해당여부 확인서 원본 1부. (현장 작성 및 제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 장애인증명서(지자체 발급) 원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원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임용 시 면접전형 증빙서류로 기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임용서류로 대체 가능

👁 임용 유의사항

- 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임용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명시한 임용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서류 미제출 또는 임용서류 확인 결과 기재사항과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용 후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은 취소됩니다.

5.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안전한 면접장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면접일정이 조정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 및 면접응시가 불가합니다.
 -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응시자는 면접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신분확인 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민·형사상책임 등)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전형단계별로 상세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안내사항

- 우리 공단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공개경쟁 및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기간 만근 시 차기년도 공단 신규직원 채용에서 아래와 같이 우대합니다.

◆ 우대사항 : 차기년도 공단 신규직원 채용에서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차기년도 필기전형 대상인 경우 1회에 한하며, 중도 퇴사자는 적용하지 않음

- 채용공고 내용은 업무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공지하거나, 해당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절차를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 제출서류 중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채용절차가 중지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출장을 위한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기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두 개 이상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희망일자리(행안부), 직접일자리 등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등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운영하오니,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계약일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합격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채용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양식)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3@kosha.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접수 시, ①성명, ②지원분야 및 응시번호, ③생년월일, ④연락처, ⑤자필서명 중 1개라도 누락될 경우 미접수
- 운영내용 : 불합격자가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시험출제자·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제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양식) 작성 및 이메일(recruit3@kosha.or.kr) 제출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사관리부(052-703-0563, 0567~05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단 일선기관별 소재지역 및 관할구역(사업수행지역)]

기 관	소 재 지 역	관 할 구 역(사업수행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7~8층)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경춘로 2370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서울북부지사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 7층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종량구 및 노원구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하슬라로 182, 3층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4~7층)	부산광역시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남구 정동로 83, 2층/4층	울산광역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경남동부지사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광주광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282 8/9/11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4층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후광대로242 7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제주특별자치도
전북서부지사	군산시 자유로 482, 2층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전남동부지사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대구광역본부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0/21층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대구서부지사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5층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인천광역본부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인천광역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10/13층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추동로 140, 1층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경기중부지사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9, 3층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경기서부지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층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2층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3층	충청북도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3층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